

양평 하늘채 센트로힐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가 가능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 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05. 10. 예정)에 당사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661-7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최고 23층 7개 동, 총 539세대 중 일반공급 200세대
[특별공급 100세대(일반[기관추천] 20세대, 다자녀가구 20세대, 신혼부부 36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18세대 포함)]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대상 세대수 : 총 20세대 ※ [구분 : ()는 예비추천세대임 / 단위 : m², 세대]

구분		59A	59B	74A	7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2(10)	-	1(5)	2(10)	5(25)	
	장기복무 제대군인	1(5)	-	1(5)	2(10)	4(2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5)	-	1(5)	2(10)	4(20)	
	중소기업 근로자	1(5)	-	1(1)	2(10)	4(20)	
	장애인	경기도	-	-	-	1(5)	1(5)
		서울특별시	1(5)	-	-	-	1(5)
		인천광역시	1(5)	-	-	-	1(5)
계		7(35)	-	4(20)	9(45)	20(100)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자 추천세대는 여부는 기관이 정함

■ 공급일정

구분	일자 (예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4. 05. 10. (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양평 하늘채 센트로힐스 (www.hanulche-yp.kr)
견본주택 개관	2024. 05. 10. (금)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67
특별공급 접수	2024. 05. 20. (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4. 05. 21. (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계약 체결	2024. 06. 10. (월) ~ 2024. 06. 13. (목)	양평 하늘채 센트로힐스 견본주택

※ 2018. 05. 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지참 필수 및 필요서류 견본주택 문의)

※ 상기 계획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은 제외)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양평군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 05. 10.(금)]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

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및 분양권 등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3.11.10.)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 1억 원(수도권은 1억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셨을 경우에는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이 중복으로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공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 관련 등 세부 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시가격 기준 1억 원(수도권은 1억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셨을 경우에는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 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 사항 등은 안내문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다시 회신 및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